

WTO 체제의 발전방안과 아국 산업의 당면과제

박 노 형
고려대 교수

1. 서론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sation : WTO)체제에서의 국내산업의 당면과제는 국내에서도 특히 경제학적이나 경영학적으로 많이 논의. 검토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이를 두 분야에서의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의 어떤 집단보다도 국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WTO체제에서의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온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평소에 소홀히 되고 있는 WTO체제에 대한 국제 경제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에서의 논의는 단지 국내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국가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국내산업도 한국 전체의 경제질서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의 논의가 국내산업에게 결코 관련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WTO체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국제경쟁조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WTO체제는 일반적으로 경제 문제로서 파악되고 있지만, 법제 도적인 문제로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법제도적 접근이 소홀한 차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는 물론 기업도 WTO체제의 실체. 절차법적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이다. 동일한 국제경쟁조건을 규정하는 WTO체제에서의 우위전략은 WTO체제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를 올바로 이해하여야만 가능하게 된다.

아래에서 국제경제법 차원에서 WTO체제의 발전전망과 아국 산업을 포함한 한국 전체의 당면과제 등을 간략히 언급한다.

2. WTO체제의 이해

1) WTO체제의 의의

1994년 4월 15일 공식적으로

“
WTO협정 등은 한국은 물론 한국의 경쟁국인 미국, 일본 및 EC 등이 똑같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규범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1995년부터 당분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똑 같은 조건의 법제도적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WTO협정 등이 규정하는 권리 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편집자 주) 본고는 지난 6월 2일과 3일 양일간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민관 합동 통상전략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게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무역 협상(UR협상)으로 변화된 국제경제 질서는 WTO체제라 불릴 수 있다. WTO체제는 1948년부터 1994년 말까지 국제무역질서의 중심이 된 기준의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체제를 다음과 같이 승계·발전시키게 된다. 첫째, 국제무역관계를 법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WTO가 창설되며 둘째, 1947년 GATT가 채택된 이래 발전되어 온 상품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인 GATT가 보완·개정되며 셋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인 서비스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이 제정되며 넷째, 국제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인 TRIPS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제정되며 다섯째, 분쟁해결제도가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되며 여섯째, 무역정책검토기능(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수행으로 국제무역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2) UR협상 타결의 의의

UR협상 타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법·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UR협상의 타결로 국제무역에 대한 각종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가 제 위치를 차지하고 세

계 전체의 부가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1990년을 전후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

산진영의 붕괴와 이에 따른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적인 세계구도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이 타 결됨으로써 세계적 안정이, 적어

WTO의 실체법적 내용

1. WTO창설협정(WTO의 조직 및 기관의 권한 배분)

2. 다자간무역협정[WTO창설협정 부속서1]

a. 상품무역협정[WTO창설협정 부속서1A]

(1) 1944 GATT :

1947 GATT /

1947 GATT 체제아래 채택된 다음의 법적 문서 :

관세양허에 관한 의정서 등 :

가입의정서 :

의무면제(Waiver) :

1947 GATT체약국단이 채택한 결정 /

UR협상에서 채택된 GATT의 관세양허 등 여섯 건의 양해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관세양허)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4) 섬유·의류에 관한 협정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에 관한 협정

(7) 반덤핑조치에 관한 협정

(8)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9)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1)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b. 서비스무역협정[WTO창설협정 부속서1B]

(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2) GATS 부속서 :

금융서비스 / 통신 / 교통 / 기본통신협상 등에 관한 부속서

c.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WTO창설협정 부속서1C]

d.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서[WTO창설협정 부속서2]

e. 무역정책검토기능[WTO창설협정 부속서3]

3. 복수간무역협정[WTO창설협정 부속서4]

a.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b. 정부구매에 관한 협정

c. 국제낙농협정

d. 국제우육협정

도 일시적이나마,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법적으로는, 1947년 채택된 GATT이래 발전되어 온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범이 보완되고 또한 서비스무역 등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이 제정되어서, 국제무역관계가 보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제2차대전의 종전 이후 국제경제관계의 근간이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WTO가 추가되어 비로서 브레튼우즈체제가 완결되게 되었다.

그러나, IMF와 IBRD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지위의 개편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게 출범한 GATT가 WTO의 보다 분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적인 체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3. WTO체제의 주요 변수

1) 구 공산권국가들의 WTO 가입에 따른 WTO의 보편적 국제기구화

러시아와 중국 등 국제무역질서에서 큰 비중을 갖지만 GATT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들과 다른 군소국가들이 WTO가입하게 되면, WTO는 거의 대부분의 국제무역관계를 관장하는 보편적 국제무역기구가 될

것이다.

2) 중국의 세계무역에서의 지위 강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중국과 대만이 GATT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 세 중국영역의 세계무역에서의 지위는 급신장하게 된다. 더욱이 싱가포르와 다른 ASEAN국가들의 화교경제권의 형성도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화교경제권은 현재 미·일·EC·캐나다의 소위 QUAD Group에 의한 국제무역질서의 주도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WTO내에서의 정치역학관계에서 민감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형성 가능성

미국 등 선진국의 주도로 환경보호, 근로자보호 및 경쟁정책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제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분야의 국제무역규범 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WTO체제의 기준 내용의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WTO체제의 실체법내용이 더 이상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결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TRIPS협정은 이제 막 국제규범으로 제정되었다. 1948년 발효한

GATT가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된 것처럼 GATS와 TRIPS협정도 앞으로 계속하여 개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오랜기간 적용되어 온 GATT도 아직 결코 완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크고 주된 분야인 기존의 WTO법체제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4. WTO출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1) 국제경제질서에서의 한국의 실제 좌표

1996년의 OECD가입이나 현재 통계로 세계 10위권의 무역국인 한국은 통계수치상의 세계순위에 집착하여 '선진국'의 구호에 들뜨기보다는 진정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실제 좌표를 겸허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상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거의 모든 기준에 있어서 미국, 일본이나 유럽의 특정국가들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하여 현재는 OECD에 가입하려 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존의 OECD국가들보다 얼마나 더 앞서 갈 수 있는 가일 것이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실체적

WTO체제의 다자무역협상 시간표¹⁰⁾

일자	내용	근거
1995년		
1월 1일	WTO출범	
6월 30일	금융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협상종료	GATS부속서
1996년		
1월 1일	정부구매협정 발효	동협정 XXV : 1조
4월 30일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종료	GATS부속서
6월 30일	연구개발보조금 규정 검토	보조금협정 8.2조/주25
6월 30일	해운서비스 협상종료	GATS부속서
1997년		
1월 1일	서비스의 정부구매 협상개시	GATS XIII조
1월 1일	선적전검사 규정 검토(이후 매3년마다)	선적전검사협정 6조
1월 1일	지리적표시에 관한 TRIPS협정규정 검토	TRIPS협정 24.2조
12월 31일	서비스의 긴급세이프가드조치 협상종료	GATS X조
1998년		
1월 1일	반덤핑분쟁의 검토기준 검토 및 상계관세분쟁에의 적용여부 검토	
1월 1일	무역의 기술장벽 검토(이후 매3년마다)	표준협정 15.4조
1월 1일	GATS의 일반예외에 관한 보고종료	각료결정
1월 1일	위생조치협정의 검토(이후 필요시마다)	위생조치협정 12.7조
1999년		
1월 1일	정부구매협정의 개선을 위한 협상개시	동협정 XXIV:7조
1월 1일	특허 등에 관한 규정의 검토종료	TRIPS협정 27.3b조
1월 1일	분쟁해결절차의 검토종료	각료결정
6월 30일	심각한 손상 및 허용보조금 검토	보조금협정 31조
2000년		
1월 1일	구체적 약속수준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무역협상의 개시	GATS XIX조
1월 1일	GATS상 최혜국대우 예외 검토	GATS부속서
1월 1일	농업협상의 개시	농업협정 20조
1월 1일	TRIP의 첫 검토(이후 매2년마다)	TRIPS협정 71.1조
1월 1일	TRIMS협정 검토종료 및 투자·경쟁정책의 추가검토	
1월 1일	양허의 수정·철회에 관한 검토	GATT XXVIII조 양해서
1월 1일	미국 Jones Act의 조부조항 검토(이후 매2년마다)	GATT1994 2항
1월 1일	TPRM 평가종료	TPRM F항
비확정일자	포도주 등에 관한 자리적 표시의 보호 협상	TRIPS협정 23/24.1조
비확정일자	서비스 보조금	GATS XV조

인 위상을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목적을 향하여 새로이 도전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외화 내빈인 한국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한국은 외면적

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충실히 않은 ‘외화내빈’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간단한 예로 한국의 세계무역량이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어서, 약간 과장한다면, 무역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무역대국으로서 얼마만큼 국제무역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볼 때 아직은 실망스런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무역관계의 바탕이요 골격이 되는 국제경제 규범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정도를 보더라도 한국이 질적으로 보다 성숙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초에 전GATT사무총장인 Dunkel씨를 Geneva의 사무실에서 만난 일이 있다.

그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한국인이 별로 많지 않음은 하나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A장관, B대사, 또는 C교수보다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진 자연인인 ‘A, B, C’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점에서 김 철수 장관의 WTO사무차장의 취임은 한국이 국제경제관계에서 내실을 추구하기 시작한 중요한 징표로 파악될 수 있다.

3) 통상협상의 제도화

현재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그동안의 문제점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그동안의 개혁과정을 평가하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즉흥적이고 어수선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정책은 즉효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이며, 즉효를 바라는 정책은 졸속일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정책이 실행되려면 특정의 사람에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올바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로 국가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경쟁조건의 WTO체제에서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의 대책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UR협상이 이제 마무리된 현재까지 과연 어떻게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통상정책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각 부처별로 분산된 통상정책의 수행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면, 이들 각각의 통상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통상문제가 결코 어느 부처에 독

립된 문제로서 수행될 수 없는 점은 제대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문제가 어느 한 독립된 부처의 소관으로 일임될 수 없다면, 각 부처의 개별적인 통상정책의 수행으로 야기될 혼선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적인 Know-how의 결집

한국이 통상마찰에 말리면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현지의 통상전문가인 변호사들을 고용한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Washington, D.C.의 변호사가 고용되고, EC와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Brussel의 변호사가 고용된다.

이같이 외국 변호사가 선호되는 것은 국내에서 국제경제법에 대한 전문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또한 국내에 믿을만한 전문 변호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외국 변호사들이 고용되어 통상마찰이 무리없이 해결되는 것이 당장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에 통상마찰에 관한 Know-how가 축적되지 못한 점은 문제이다. 이점에서 전문성과 실무의 경험이 모자란다고 하여도, 국내의 변호사나 교수들이 계속적으로 통상마찰의 해결과정에 개입하여 이들이 국가차원의 Know-how를 정리·축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마찰의 유형을 보면

똑같은 유사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됨을 알 수 있다.

같은 업종의 기업이 겪은 통상분쟁을 후일에 또다른 기업이 겪게 되고, 일본 등이 앞서서 겪은 분쟁을 한국이 또다시 겪게 된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지속적으로 통상을 포함한 국제경제 문제를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연구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정 주제의 연구보다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국제경제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경제법연구의 토대에 관련 자료의 정리와 분석 및 활용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정부, 기업, 학계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5) 통상마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WTO에 두 번이나 제소하여 정부부처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국내에서는 WTO라는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하면 1980년 중반기 이후 지속된 미국 중심의 거센 통상압력이 완화되고, 국제무역관계에서의 우리의 입장이 보다 공고하여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이점에서 WTO가 출범하고 반

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미국이 한국을 WTO에 두 번이나 제소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제소의 입장이던 피소의 입장이던 앞으로 WTO에 더욱 자주 가야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높아진 국제무역관계에서의 위상때문이다.

한국이 무역액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국은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시장에 있어서 미국, EC 및 일본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중요한 '공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관계에서 규모가 이미 커질대로 커진 한국으로서는 미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필연적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는 관련 국제무역규범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게 되며, 한국이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에 한국으로서는 법위반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잡한 국제무역관계에서는 조금 과장하면 통상마찰은 길거리에서 자동차들 사이의 가벼운 접촉사고처럼 생각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순응적이고 착하기만한 한국으로서는 통상마찰에 대하여 보다 의연하고 대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의 담당자들도 그렇고 특히 언론도 그래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WTO에 벌써 두번이나 제소하였지만, 미국도 WTO체제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패널의 피소국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통상마찰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마찰의 주된 원인인 국제규범의 위반은 물론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 규범은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이 WTO의 회원국이 된 이상 한국은 WTO법체제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의 상당한 국내법제도가 아직도 관련 국제규범에 비교하여 낙후된 사실은 한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가 국내규범을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부지런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개정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WTO체제 국제규범의 위반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통상마찰에 시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국과 한국의 통상정책의 수행상 큰 차이점은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다른 시각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치문제와 철저히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문제 중에서도 분야별로 철저히 구분하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어느 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다른 문제에 대한 자동적 해결이 될 수 없다. 일단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로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한국은 여전히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한·미간의 보다 넓은 정치관계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한가지 경제문제를 다른 경제문제의 해결 또는 억제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같이 독립적이며 실리적인 사고를 하여야 한다.

6) 수출과 수입/상품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종합적인 접근

어느 국가든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대체로 제조업체 등 국내의 특정 집단이 주도한다. 그러나, 수입은 해당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경제학원론적 설명에 더하여 소비자들과 같은 또 다른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준다. 국가 전체로서 수출과 수입은 함께 바라보고 논의되어야 한다. WTO체제의 분쟁해결 제도상의 교차보복의 예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5. WTO체제와 국내업계의 대응

WTO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UR협상에서 노출된 한국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WTO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995년 출범한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WTO'로 만들어야 한다.

WTO협정 등은 한국은 물론 한국의 경쟁국인 미국, 일본 및 EC 등이 똑같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 규범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1995년부터 당분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똑같은 조건의 법제도적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WTO협정 등이 규정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 WTO협정 등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WTO체제에서 마련된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48년 이후 발전되어온 GATT체제를 포함한 WTO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결적 과제가 된다.

둘째, 1995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WTO체제에서 계속 수행될 또 다른 다자간무역협상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다자간무역협상은, UR협상처럼, WTO회원국들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무역규범의 개정과 제정을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협상을 대비하는 것도 WTO체제에 대한 대응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한국이 이들 다자간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이 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서, UR협상에서 노출된 한국의 문제점을 개선·극복하는 것이 WTO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될 것이다.

다만, 이들 다자간무역협상이 결코 환경보호나 노동문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WTO체제의 실체법적·절차법적 규범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앞서도 지적되어 중복되겠지만, 통상을 포함한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내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기업·학계의 상호간의 보다 원활한 협조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I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I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IAK-NET 가입안내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자료과

Tel : 553-8941/7 (고 : 45)